㈜ 메이크순

안전보건관리지침

제정·개정 이력
2026. 09.01　　최초 제정

담당부서 : 관리팀

안전보건관리지침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지침은 (주)메이크순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① 이 지침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
② 회사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, 운송업체 및 기타 외부 작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본 지침의 안전보건 원칙을 적용한다.

③ 회사의 생산공정 중 프레스 가공, 용접 가공 및 기타 주요 가공공정은 외부 협력업체에서 수행하고 회사는 해당 공정에서 가공된 반제품을 입고하여 검사, 조립, 완제품 검사, 포장 및 출하 업무를 수행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한다.

안전과 보건을 경영활동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한다.

임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.

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한다.

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.

안전보건 관련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
임직원이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외부 협력업체 및 운송업체와의 업무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
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.

안전보건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.

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

제4조(대표이사의 책임)

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한다.

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임직원에게 이를 알린다.

③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인력, 시설, 장비 및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④ 대표이사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.

제5조(안전보건관리 담당자)

①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.

②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
사업장 위험요인 확인
위험성평가 실시 및 관리
안전보건교육 관리
작업장 안전점검
보호구 및 안전장비 관리
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
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사고조사
안전보건 관련 기록관리
협력업체 및 외부 작업자의 안전관리
기타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안전보건 관련 업무

제6조(관리감독자의 책임)

① 관리감독자는 담당 업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실시한다.
②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작업환경 및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.
③ 관리감독자는 작업자가 안전수칙 및 보호구 착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한다.
④ 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필요한 개선조치를 실시한다.

제7조(근로자의 의무)

① 근로자는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과 작업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② 근로자는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③ 근로자는 작업 중 위험요인 또는 안전사고를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근로자는 기계, 공구 및 안전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해체해서는 안 된다.

제3장 사업장 및 공정별 안전관리

제8조(사업장 공정의 구분)

회사의 주요 업무공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외부 협력업체 가공공정
반제품 입고 및 하역
반제품 보관 및 적재
반제품 입고검사
제품검사
제품 조립
완제품 검사
포장
완제품 보관
출하 및 상차

제9조(외부 가공공정 관리)

① 프레스 가공, 용접 가공 등 회사 외부에서 수행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

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②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 및 거래 과정에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작업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③ 협력업체의 작업 과정에서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④ 회사 임직원이 협력업체의 가공현장을 방문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반제품 입고 및 하역)
① 외부 협력업체에서 가공된 반제품이 입고되는 경우 하역 및 운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.
② 반제품의 중량, 형상, 적재상태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한 방법으로 하역한다.
③ 차량의 상·하차 작업 시 낙하, 전도 및 끼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④ 반제품을 운반할 경우 필요한 경우 운반장비를 사용한다.
⑤ 하역 및 운반작업자는 안전화 및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한다.

제11조(반제품 보관 및 적재)
① 반제품은 지정된 장소에 안정적으로 적재한다.
② 적재물의 전도 및 낙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방법과 높이를 적절하게 관리한다.
③ 통로 및 비상구에는 제품이나 자재를 적치하지 않는다.
④ 적재된 제품을 꺼낼 때 주변 제품의 전도 및 낙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
제4장 검사 및 조립공정 안전관리

제12조(검사작업 안전)
① 제품검사 작업자는 검사대 및 작업공간을 정리정돈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지한다.
② 검사 대상 제품의 중량과 형상을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적용한다.
③ 제품의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에 의한 베임·찔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.
④ 검사작업에 필요한 측정기기 및 검사장비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.

제13조(조립작업 안전)
① 조립작업은 정해진 작업방법과 안전수칙에 따라 실시한다.
② 조립작업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한다.
③ 조립공구 및 전동공구는 사용 전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.
④ 공구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견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 또는 수리한다.
⑤ 조립 중 제품이 넘어지거나 움직일 위험이 있는 경우 제품을 안정적으로 고정한 후 작업한다.

제14조(전동공구 및 수공구 관리)
① 전동공구 및 수공구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.
② 전동공구 사용 전 전선, 플러그, 스위치 및 안전장치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.

③ 회전부 또는 절단부가 있는 공구는 작업 중 신체가 위험부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.
④ 사용하지 않는 공구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.

제5장 포장 및 출하 안전관리

제15조(포장작업)
① 포장작업 시 작업공간을 정리정돈하여 작업자의 이동 및 제품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② 포장용 자재 및 제품을 무리하게 운반하지 않도록 한다.
③ 칼, 절단공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베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.
④ 포장 완료된 제품은 안정적으로 적재한다.

제16조(완제품 보관)
① 완제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.
② 제품 적재 시 전도 및 낙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.
③ 제품의 이동통로와 비상통로를 확보한다.

제17조(출하 및 상차)
① 출하작업 전 제품의 수량, 중량 및 적재방법을 확인한다.
② 차량 상차 작업 시 제품의 낙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.
③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상차작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차량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한다.
④ 지게차 등 운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장비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.
⑤ 작업자는 차량과 제품 사이 또는 제품과 제품 사이의 끼임 위험구역에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는다.

제6장 위험성평가

제18조(위험성평가 실시)
① 회사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한다.
② 위험성평가는 회사의 실제 업무공정을 기준으로 실시한다.
③ 위험성평가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포함한다.

반제품 입고 및 하역
제품 운반 및 적재
제품검사
조립
전동공구 사용
포장
완제품 보관
출하 및 상차
기타 회사에서 수행하는 작업

제19조(위험성평가 절차)

위험성평가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.

작업공정 파악
유해·위험요인 파악
위험성 결정
개선대책 수립
개선조치
개선결과 확인
기록 및 관리

제20조(위험성 개선)

①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우선적으로 개선한다.
② 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작업방법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한다.
③ 개선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해당 작업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.

제7장 안전보건교육

제21조(안전보건교육)

① 회사는 임직원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.
② 교육내용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회사의 안전보건방침
작업별 안전수칙
위험성평가 결과
반제품 입고 및 운반 안전
제품 적재 및 하역 안전
조립작업 안전
전동공구 사용 안전
포장 및 출하 안전
화재예방
비상상황 대응
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
기타 필요한 사항

제22조(신규 및 작업변경 교육)

신규 입사자 또는 작업내용이 변경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.

제8장 보호구 및 작업환경관리

제23조(보호구 지급 및 착용)

① 회사는 작업의 위험요인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한다.
②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
③ 보호구가 훼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
주요 보호구
안전화
안전장갑
보안경
안전모
방진마스크
귀마개 또는 귀덮개
기타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

제24조(작업장 정리정돈)

① 작업자는 작업 종료 후 작업장 및 작업대를 정리정돈한다.
② 통로, 출입구, 비상구 및 소방시설 주변에는 물품을 적치하지 않는다.
③ 바닥에 기름, 물 또는 기타 미끄럼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제거한다.

제9장 전기 및 화재안전

제25조(전기안전)

① 전기설비 및 전기기기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·관리한다.
② 전선, 콘센트, 분전반 등의 손상이나 이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③ 전기설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수리하지 않는다.
④ 전기설비의 점검 및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전원을 차단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다.

제26조(화재예방)

① 회사는 화재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한다.
②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한다.
③ 비상구 및 피난통로를 항상 확보한다.
④ 전열기구 및 전기기기의 불필요한 사용을 제한한다.
⑤ 화재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조치한다.

제10장 사고 및 비상상황 대응

제27조(사고 발생 시 조치)

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견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리자에게 보고한다.
② 회사는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.
③ 필요한 경우 소방서, 경찰서,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한다.

④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현장을 통제한다.

제28조(사고조사 및 재발방지)

① 회사는 안전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인을 조사한다.
②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.
③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에 반영한다.

제11장 협력업체 및 운송업체 안전관리

제29조(협력업체 관리)

① 회사는 외부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.
② 회사는 협력업체의 프레스, 용접 등 외부 가공공정에서 회사 임직원이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.
③ 협력업체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확인된 경우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30조(운송업체 안전관리)

① 반제품 및 완제품의 운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업체와 필요한 안전사항을 협의한다.
② 상·하차 작업 시 제품의 낙하 및 전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한다.
③ 차량 운전자는 사업장 내 차량 운행속도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장 안전보건 점검 및 개선

제31조(안전점검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노력한다.

작업장 정리정돈 상태
반제품 및 완제품 적재상태
운반 및 하역작업 상태
조립작업장 안전상태
전동공구 및 작업공구 상태
전기설비 상태
소방시설 상태
보호구 관리상태
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상태
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

제32조(개선조치)

①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조치를 실시한다.

② 개선조치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확인한다.
③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방법, 설비 또는 관리방법을 개선하도록 한다.

제13장 근로자의 참여

제33조(안전보건 의견수렴)
①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② 근로자는 작업 중 발견한 위험요인이나 개선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.
③ 회사는 근로자가 제기한 안전보건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실시한다.

제34조(작업중지)
근로자는 작업 중 본인 또는 다른 근로자의 생명·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장 기록 및 문서관리

제35조(안전보건 기록)
회사는 다음의 안전보건 관련 기록을 작성·관리하도록 노력한다.

안전보건교육 기록
위험성평가 기록
안전점검 기록
사고 및 재해 기록
보호구 지급 및 관리 기록
협력업체 안전관리 기록
기타 안전보건 관련 기록

제36조(문서관리)
안전보건 관련 문서는 회사의 문서관리 기준에 따라 작성, 보관 및 관리한다.

제15장 보칙

제37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
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취업규칙, 안전보건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8조(지침의 개정)
회사는 관계 법령의 변경, 작업환경의 변화 및 안전보건관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.

제39조(시행)

이 지침은 2026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
이 지침은 2026 년 09 월 01 일부터 시행한다.

2026 년 09 월 01 일

㈜ 메 이 크 순

공동대표 김미란 , 이항준 (인)